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변호사시험 선택과목 폐지〉

■ 권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4288호)

2025. 1.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전 문 위 원 김 성 완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1. 변호사시험 선택과목 폐지	2
[참고자료] 변호사시험 전문과목 출제범위	8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권칠승의원 등 11인
2. 제안연월일 : 2024. 9. 25.
3. 회부연월일 : 2024. 9. 26.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변호사시험의 선택과목으로 국제법, 국제거래법, 노동법, 조세법, 지적재산권법, 경제법, 환경법 등 7개 과목을 규정하고, 응시자는 이 중 1개 과목을 선택하여 시험에 응시하도록 규정함.

그런데 과목별로 난이도의 차이에 대한 지적이 있고, 일부 과목은 다른 자격증의 시험 과목과 중복되기도 함. 따라서, 일부 과목에 응시자가 편중되어 선택과목 폐지의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데, 일선 법학전문대학원뿐만 아니라 교육부, 법무부 등도 개선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선택과목을 폐지하여 응시자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일선 교육기관의 정상적 학사운영의 어려움을 완화하려는 취지임(안 제9조).

Ⅲ. 검토의견

1. 변호사시험 선택과목 폐지

현행	개정안
제9조(시험과목) ① 시험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 (생략) 4. <u>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으로 응시자가 선택하는 1개 과목</u> ② <u>제1항제4호에 따른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③ (생략) ④ <u>제2항에 따른 시험과목을 신설·폐지하거나, 제3항에 따라 시험과목의 출제 범위를 변경할 경우에는 해당 과목의 시험 예정일부터 역산(逆算)하여 2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어야 한다.</u>	제9조(시험과목) ① ----- -----. 1. ~ 3. (현행과 같음) <u><삭 제></u> <u><삭 제></u> ③ (현행과 같음) ④ <u>제3항에</u> ----- ----- ----- ----- ----- -----.

- 개정안은 변호사시험에서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이하 ‘전문과목’)으로서 응시자가 1개 과목을 선택하도록 하는 이른바 선택과

목을 폐지하고, 별도 유예기간 없이 즉시 적용하는 내용임(안 제9조).

- 현행법상 변호사시험은 법조윤리시험과 필기시험으로 구분되고, 필기시험 과목은 공법(헌법, 행정법), 민사법(민법, 상법, 민사소송법), 형사법(형법, 형사소송법),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이하 ‘전문과목’)으로 구성되며, 각 과목별로 선택형과 논술형(사례형, 기록형)의 방법으로 필기시험을 실시하고 있음.¹⁾

<변호사시험의 시험방법 및 과목>

구 분	과 목		시험방식	비 고
법조윤리 시험	법조윤리		선택형	합격 · 불합격제
필기시험	공법	헌법	선택형 · 사례형 · 기록형	점수 합산 평가
		행정법	선택형 · 사례형 · 기록형	
	민사법	민법	선택형 · 사례형 · 기록형	
		상법	선택형 · 사례형 · 기록형	
		민사소송법	선택형 · 사례형 · 기록형	
	형사법	형법	선택형 · 사례형 · 기록형	
		형사소송법	선택형 · 사례형 · 기록형	
	전문과목		사례형	

1) 제9조(시험과목) ① 시험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법(헌법 및 행정법 분야의 과목을 말한다)
2. 민사법(「민법」, 「상법」 및 「민사소송법」 분야의 과목을 말한다)
3. 형사법(「형법」 및 「형사소송법」 분야의 과목을 말한다)
4.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으로 응시자가 선택하는 1개 과목

○ 위 전문과목 시험은 국제법, 국제거래법, 노동법, 조세법, 지적재산권법, 경제법, 환경법 7과목 중 1과목을 선택하여 사례형으로 실시하고 있음.²⁾

○ 최근 6년간 변호사시험 전문과목 시험 응시현황을 살펴보면 ‘국제거래법’과 ‘환경법’ 과목으로 응시자가 편중된 경향을 보이고 있어³⁾ 다양한 전문분야에서 법조인을 양성하려는 변호사시험의 목적에 부합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는 있어 보임.

<최근 6년간 변호사시험 전문과목 시험 응시자 현황>

구분	경제	국제 거래	국제	노동	조세	지적 재산권	환경	전체
2018년 (7회)	309	1,404	241	415	81	95	695	3,240
2019년 (8회)	378	1,439	236	334	108	114	721	3,330
2020년 (9회)	427	1,224	303	242	99	115	906	3,316
2021년 (10회)	386	1,147	298	203	103	121	898	3,156
2022년 (11회)	336	1,291	348	169	87	98	868	3,197
2023년 (12회)	258	1,559	382	138	71	103	744	3,255

*2024년도 선택과목 통계자료는 제공되지 않음(자료: 법무부 법조인력과)

2) 참고자료, 변호사시험 전문과목 출제범위 참조.

3) 법무부 변호사시험 통계(2018년 ~ 2025년)

- 개정안은 전문과목에 대한 시험 부담을 경감시키고 법학전문대학원생들에게 다양한 전문과목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과목별로 편중된 응시경향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법학전문대학원 교육 다양화 및 변호사시험의 목적에 비추어 그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어 보임.

변호사시험의 전문과목을 폐지할지의 여부는 입법부에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가 인정되므로⁴⁾ 기본적으로는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겠으나, 전문적 법률분야 과목 교육의 부실화 및 변호사에 대한 전문성 저하 우려 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

현행 제9조제4항은 전문과목을 신설·폐지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목의 시험 예정일부터 역산하여 2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의 입법조치는 전문과목 규정 자체를 삭제함으로써 유예기간을 두지 않게 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와 같이 별도의 유예기간을 두지 않고 전문과목을 폐지하는 것에 대해서도 수험생들의 예측가능성 및 신뢰보호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필요시 시행일⁵⁾을 조정하는 등의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4) 2012. 4. 24. 헌법재판소 2009헌마608

… 입법부가 일정한 전문분야에 관한 자격제도를 마련함에 있어서는 그 제도를 마련한 목적을 고려하여 정책적인 판단에 따라 자격제도의 내용을 정함에 있어서 그 내용이 명백히 불합리하고 불공정하지 아니하는 한 원칙적으로 입법부에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가 인정된다 …

5) 개정안 부칙에 따른 시행일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 규정하고 있음.

○ 관계 기관의 의견은 다음과 같음.

법무부는 특정과목 편중 해결 등을 위한 개정안 취지에는 공감하나, 단순 시험폐지는 전문적 법률분야 과목 교육 부실화 및 변호사의 전문성 저하 우려가 있어 대체 평가 수단, 시험 방식 변경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① 법전원에서 전문적 법률분야 과목을 일정 학점 이상 이수하는 것으로 시험을 대체하는 방안, ② 시험을 유지하면서 학점 이수를 전제한 객관식·Pass/Fail 방식 시험으로 변경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였고,

유예기간을 제외하는 안 제9조제4항에 대해서는 법전원의 학사 관리, 기존 법전원생의 예측가능성 및 신뢰보호 등 고려할 때 유예기간 폐지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시함.⁶⁾

대한변호사협회는 선택과목 관련 제도 개선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변호사시험에서 선택과목의 전면 폐지는 반대한다고 하면서, 다양한 특성화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하고자 한 선택과목 도입 취지를 고려할 때 단순 폐지보다는 과목 간 난이도 및 시험 범위 조정이나 채점 시 과목별 가중치 조정 등을 통해 해소할 수 있도록 하고, 실무에서 자주 활용될 수 있는 선택과목을 추가하는 등으로 응시생이 다양한 과목을 폭넓게 선택할 수 있는 유인을 제

6) 법무부 의견회신(2024. 10.)

공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⁷⁾

문 의 처
02) 6788-5060

7) 대한변호사협회 의견회신(2024. 11.)

※ 참고자료

1. 변호사시험 전문과목 출제범위(「변호사시험법 시행령」 별표 2)

과목	출제범위
국제법	국제경제법을 포함한다.
국제거래법	「국제사법」과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 협약」으로 한다.
노동법	사회보장법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포함한다.
조세법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으로 한다.
지적재산권법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및 「저작권법」으로 한다.
경제법	「소비자기본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환경법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영향평가법」,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토양환경보전법」, 「자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및 「환경분쟁조정법」으로 한다.